

(우)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37 [http://www.kma.org] / 전화(02)6350-6511/ 전송(02)797-8176
정책국 국장 이병인[6552] 불법의료대응팀장 박재희[6532] 팀원 심영보[6511]/E-mail: kma7892@naver.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715-1980호

시행일자 2026. 5. 13.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피해 신고 사례 관련 협조 재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올바른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 범위를 초과한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례별로 유형화하여 대응하고자 관련 제보를 수시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3. 최근 우리협회로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피부관리실에서 레이저 유사 기기, 니들, MTS 등을 이용한 시술을 시행하거나, 재활운동센터 등 비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도수치료’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재활운동’으로 명칭만 바꾸어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대한 위법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4. 이에 우리협회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추가로 취합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사례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귀 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 등

※신고서 양식을 통해 접수

나. 회신처 : 의협 불법의료대응팀(E-mail : kma7892@naver.com Tel : 02-6350-6511)

붙임 : 1) 불법의료행위 피해 신고서 양식(의사작성용) 1부.

2) 불법의료행위 피해 신고서 양식(일반인작성용)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각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26개 전문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군진 의사협의회장, 대한공공의학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 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 의협의회장